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0
----------	-----

발의연월일 : 2013. 4. 15.

발의자 : (유인환) 의원 외 2인

## 1. 제안이유

-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내 노인, 대한노인회 산하 관내 노인회,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효행장려사업, 노인복지증진시설
- 지원내용 세분화 규정 (안 제4조)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운영비 · 간식비 · 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보화 촉진 장비 및 시설,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 노인의 날 등 행사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급식, 여비 등 실비보상
  -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어버이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 장수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안 제5조)

###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련법규 : 불임참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13.3.26~4.14, 의견없음
- 집행기관 의견수렴 : 의견없음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 수당”이란 평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7조에 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래교실  
을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어버이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의 평창군 관내 노인회
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5.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효행장려사업
6. 기타 평창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수당

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간식비·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컴퓨터·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 단련기구
  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7.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에게 설날·추석·노인의 날·경로의 날·어버이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 ③ 제3조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음식,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장수수당의 지급) 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관외 전출,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의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